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연직 위원) 경제과학국장은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4.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사·분석 5. 유통분쟁 조정 제외대상·거부 사항의 결정 6. 그 밖에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과학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과 중복</p> <p>제3조(당연직 위원) 경제과학국장은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중복되어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시내거주 소비자 <p>제6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과 중복</p>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3호]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 (조정 효력) ①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 (조정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22 대통령령 제19542호]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22]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06.6.22]